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

# 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자치행정과)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160호                   |
| 제 출 자 | 성북구청장(2023. 08. 29)    |
| 의 안 명 |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|
| 검 토   | 전문위원 정 진 만             |

### 1. 제안이유

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,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
- 2) 설치목적 :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
- 3) 설치연도 : 2023년

#### 나. 기금운용 개요

##### 1) 기금재원(수입)

-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기부금
-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## 2) 기금용도(지출)

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-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-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## 3)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2023년 모금된 기부금 전액 예치

## 4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| ' 22년도말<br>조성액 ㉠ | ' 23년도 기금운용계획 |     |             | ' 23년도말<br>조성액<br>㉡=㉠+㉢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수입㉢           | 지출㉣ | 증감<br>㉤=㉢-㉣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               | 12,064        | -   | 12,064      | 12,064                  |

## 다. 자금운용계획

### 1) 자금수지 총괄

(단위 : 천원)

| 수입계획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지출계획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항 목              | ' 23년<br>수입액 | 전년도<br>수입액 | 증 감    | 항 목          | ' 23년<br>지출액 | 전년도<br>지출액 | 증 감    |
| 합 계              | 12,064       | -          | 12,064 | 합 계          | 12,064       | -          | 12,064 |
| 전입금              | 9,705        | -          | 9,705  | 비용자성<br>사업비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보조금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음자성<br>사업비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차입금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인력운영비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음자금회수<br>(이자 포함)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기본경비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예탁금<br>원금회수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예탁금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예치금회수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예치금          | 12,064       | -          | 12,064 |
| 예수금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차입금<br>원리금상환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이자수입             | 64           | -          | 64     | 예수금<br>원리금상환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기타수입             | 2,295        | -          | 2,295  | 기타지출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
## 2)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| 장               | 관           | 항        | 목                | '23년<br>수입액 | 전년도<br>수입액 | 증 감    |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0 세외수입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210 경상적세외수입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16 이자수입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216-01 공공예금 이자수입 | 64          | -          | 64     | 구금고 예치금<br>이자수입                |
| 220 임시적세외수입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16 기타수입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224-03 기부금 수입    | 2,295       | -          | 2,295  | 기금설치 후 기부금<br>수입               |
|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720 내부거래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721 전입금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721-03 기타회계 전입금  | 9,705       | -          | 9,705  | 기금설치 전 기부금<br>수입<br>(일반회계 전입금) |
| 수 입 합 계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12,064      | -          | 12,064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3)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| 조직      | 부문    | 정책   | 단위           | 세부           | 편 성 목  | '23년<br>지출액 | 전년도<br>지출액 | 증감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자치행정과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재정·금융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      | 재무활동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      |      | 보전지출(고향사랑기금)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602 예치금  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602-01 일반예치금 | 12,064 | -           | 12,064     |        |
| 지 출 합 계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12,064      | -          | 12,064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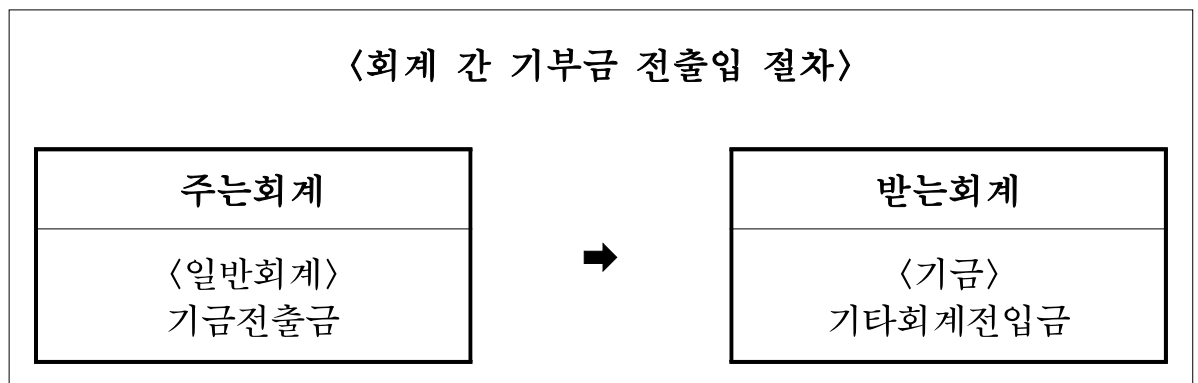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2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- 3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(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)
- 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 
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- 5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

#### 나. 예산조치

- 1) 기금 설치 전 모금된 기부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(과목: 기부금 수입)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,
- 2) 기금 설치 후에는 기 모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, 새로 모금되는 기부금은 기금으로 직접 수입처리 예정임

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    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# 4. 검토의견

○ 본 운용계획안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,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·운용을 위하여 ‘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’을 설치하고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<sup>1)</sup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<sup>2)</sup>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고향사랑기금 추진경위를 보면,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(2023. 1. 1) 되었으며,

---

1)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
2.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·부문·정책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○ 우리구에서는 관계 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지급,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, 2023년 4월 20일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였음.

○ 2023년 7월 13일,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<sup>3)</sup>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<sup>4)</sup>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<sup>5)</sup> ‘고향사랑

**3)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고향사랑기금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라 모집·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4) 제13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**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.

**5) 제30조(고향사랑기금)**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이 조에서 “고향사랑 기부금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기금' 설치 운용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음.

○ 2023년 고향사랑기금 조성은 1,206만원(전입금 970.5만원, 이자수입 6.4만원, 기타수입 229.5만원)으로 모금된 기부금 전액을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,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 있는 답례품과 홍보를 통해 기부금 규모를 확대하고 주민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
1.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  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 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  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  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  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- 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3.7.13.]